

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- 81호

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

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(7급)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1일

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 시험일시

- 2021. 10. 16.(토) 10:00 ~ 11:40 (100분) ※ 09:10까지 입실

※ 장애인 응시자 시간연장 : 1.5배 10:00~12:30 (150분) / 1.7배 10:00~12:50 (170분)

2 응시자 유의사항**[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사항]**

- **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**합니다.
-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전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, 증상 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시험장 입실 시 응시자 간 안전거리를 최소 **1.5m** 이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장 내에서는 **항상 마스크를 착용**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, 응시자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, 분실 또는 착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.

- 안전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본인의 건강상태, 출입국 이력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'자진신고시스템(<https://local.gosi.go.kr>)'을 15일간[10. 1.(금) ~ 10. 15.(금)] 운영 하오니,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**환자, 의사환자, 감염병 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(또는 자가격리 통지서)를 받아 격리 중인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합니다.**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본인이 수험생임을 알리고 아래의 신청기한 내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,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 (시험장소 및 방법 별도 통보)

<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응시 사전신청 안내>

- 1) 신청기한 : **2021. 10. 15.(금) 18:00까지**
 - 2) 제출서류
 - 확진자 : 응시 신청서[붙임 4],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서
 - 자가격리자 : 응시 신청서[붙임 5], 외출허가 증빙서류
 - 3) 신청방법: **전화 신청(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, ☎ 031-8008-4047) 후** 신청기한 내 제출서류 이메일(ggexam@korea.kr) 송부
- ※ 시험장 준비, 시험문제 수송 등의 관계로 기한 내 사전신청 하지 않은 경우 응시 불가
※ 타 시·도에서 확진된 경우 여건에 따라 시험응시가 어려울 수 있음

- 모든 응시자는 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“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[붙임 3]”에 따라 **올바른 마스크 착용, 손소독 및 발열검사,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모든 시험장은 시험전일 및 시험종료 후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.
- 격리대상자 응시 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장 출입구에서 응시표 또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퇴실 시 인원 분산을 위해 시험실별 퇴실 가능 시간을 별도로 고지하고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퇴실 예정이오니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퇴실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, 기침, 인후통, 호흡기 증상 등을 스스로 모니터링해야 하며, 코로나19 의심 징후가 있으실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(☎1339, 지역번호+120)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일반사항]

-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**09:10까지**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 (시험당일 오전 8시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)
-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**응시표, 신분증,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, 수정테이프**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 - 응시표: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 → 마이페이지 → 응시표 출력
 - 신분증: **주민등록증, 여권(유효기간 경과 시 불인정)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**
 - 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 -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**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**(수정액·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 다만,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별도 제공하지 않음
 - ※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당해 시험 무효행위에 해당됨
-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시험 전일까지 시험실에는 들어갈 수 없음)
-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**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. (시험장 주변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바람)**
-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‘취업지원대상자(또는 의사상자 등) 가산점’ 및 ‘자격증 가산점’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**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에[2021. 10. 16.(토) 09:00 ~ 2021. 10. 19.(화) 18:00]** 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에 접속하여 **가산점 정보를 등록**하여야 합니다.
- **문제책이 시험실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 (09:50 시험장 출입문 일괄 통제)**
- **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(카페인, 탄산음료 등)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 - 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
-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불펜 똑딱 소리, 습관적 헛기침 등)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시험장(시설 전체)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-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, 태블릿PC,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(안경 등), 스마트 시계, 무선호출기, MP3, 이어폰,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, 전자담배 등 통신, 계산 또는 검색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, 시험시간 중 휴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당해시험이 무효처리 되고 및 퇴실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**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**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안내 또는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**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 - ※ 계산·통신 등의 기능이 있는 시계, 소리로 인해 타 응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계는 사용 불가
- **시험 중 답안지를 교체할 경우 성명, 책형, 생년월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먼저 기재하고 시험감독관 서명을 받은 후 답안을 옮겨 적을 수 있으며, 이전 답안지는 시험 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**
-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,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

다만, 경기도에서 자체 출제한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,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.(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)

직급	직렬	직류	자체출제 과목명	비 고
7급	전산	전산	자료구조론, 데이터베이스론, 소프트웨어공학, 정보보호론(4과목)	비공개
	농업	일반농업	재배학, 식용작물학, 토양학(3과목)	비공개
		축산	가축사양학, 가축육종학, 축산경영학(3과목)	비공개
	보건	보건	보건학, 보건행정학, 역학(3과목)	비공개
	환경	일반환경	환경공학, 환경계획, 생태학(3과목)	비공개

※ 출제된 비공개 문제책의 내용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녹화기기(안경 등)로 촬영하거나 문제책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.

-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 정답 이의 제기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 정답 이의 제기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안내 >

- 정답가안 공개 : 2021. 10. 16.(토) 14:00
- 이의 제기기간 : 2021. 10. 16.(토) 18:00 ~ 10. 19.(화) 18:00
- 최종정답 공개 : 2021. 10. 25.(월) 18:00

※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 → 시험문제 / 정답

[답안지 기재 및 표기]

- 점수산출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.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“컴퓨터용 흑색 사인펜”을 사용하여 반드시 <보기>의 올바른 표기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 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한 경우, 농도가 얇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은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보기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

- 적색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을 반드시 기재(표기)하여야 합니다.

※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음

-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, 문제책 누락, 인쇄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선택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을 표기하여야 함.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,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됨

-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해야 하며, **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당해 시험 무효행위로 간주되므로 수정테이프가 없는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**

※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,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함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
※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
-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(■■■■■)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.

[부정행위 등 금지]

-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 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제1항)

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-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 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제2항)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(수정테이프 등)을 빌리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-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 -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장이 아닌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 - 기타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르지 않아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- ▶ **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※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에 해당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

- ▶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 응시기관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소

- 원서접수 시 선택한 응시희망지역(경기북부, 경기남부), 임용기관, 응시직렬(직류) 및 응시번호로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(학교)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(장) :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

- 지역별로 학교명이 유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,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[응시지역 : 경기북부 - 의정부]

임용 기관	직렬 및 직급	응시번호	수용 인원	시험장		비 고
				학교명	주소	
경기도	행정7급(일반행정)	11000001 ~ 11000001	1	회룡중학교 (256명)	의정부시 안말로 45	주차불가
	행정(장)7급(일반행정)	12000001 ~ 12000026	26			
	전산7급(전산)	13000001 ~ 13000046	46			
	농업7급(일반농업)	14000001 ~ 14000033	33			
	농업7급(축산)	15000001 ~ 15000013	13			
	녹지7급(산림자원)	16000001 ~ 16000029	29			
	보건7급(보건)	17000001 ~ 17000026	26			
	환경7급(일반환경)	18000001 ~ 18000030	30			
	시설7급(일반토목)	19000001 ~ 19000033	33			
	시설7급(건축)	20000001 ~ 20000018	18			
용인시	시설7급(일반토목)	19030001 ~ 19030001	1			
경기도	행정7급(일반행정)	11000002 ~ 11000561	560	송양중학교 (560명)	의정부시 용민로 308	
경기도	행정7급(일반행정)	11000562 ~ 11001074	513	호원고등학교 (542명)	의정부시 망월로 56	
용인시	행정7급(일반행정)	11030001 ~ 11030012	12			
평택시	행정7급(일반행정)	11100001 ~ 11100017	17			

[응시지역 : 경기남부 - 수원, 용인, 성남, 화성, 군포, 오산]

임용 기관	직렬 및 직급	응시번호	수용 인원	시험장		비 고
				학교명	주소	
경기도	행정7급(일반행정)	11001075 ~ 11001077	3	수원중학교 (325명)	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66-10	주차불가
용인시	행정7급(일반행정)	11030013 ~ 11030013	1			
경기도	행정(장)7급(일반행정)	12000027 ~ 12000094	68			
경기도	전산7급(전산)	13000047 ~ 13000195	149			
경기도	농업7급(일반농업)	14000034 ~ 14000137	104			
경기도	농업7급(축산)	15000014 ~ 15000045	32	남수원중학교 (503명)	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162	
경기도	녹지7급(산림자원)	16000030 ~ 16000075	46			
경기도	보건7급(보건)	17000027 ~ 17000109	83			
경기도	환경7급(일반환경)	18000031 ~ 18000166	136			
경기도	시설7급(일반토목)	19000034 ~ 19000111	78			
용인시	시설7급(일반토목)	19030002 ~ 19030037	36			
평택시	시설7급(일반토목)	19100001 ~ 19100006	6			
경기도	시설7급(건축)	20000019 ~ 20000092	74			
평택시	시설7급(건축)	20100001 ~ 20100012	12			
경기도	행정7급(일반행정)	11001078 ~ 11001497	420	죽전중학교 (420명)	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71번길 15	
경기도	행정7급(일반행정)	11001498 ~ 11001858	361	고림고등학교 (575명)	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165	
용인시	행정7급(일반행정)	11030014 ~ 11030227	214			
경기도	행정7급(일반행정)	11001859 ~ 11002558	700	안화중학교 (700명)	화성시 병점2로 125	
경기도	행정7급(일반행정)	11002559 ~ 11002838	280	분당중학교 (280명)	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4	
경기도	행정7급(일반행정)	11002839 ~ 11003218	380	성남테크노 과학고(380명)	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58번길 7	
경기도	행정7급(일반행정)	11003219 ~ 11003678	460	도장중 (460명)	군포시 고산로 460	
경기도	행정7급(일반행정)	11003679 ~ 11003978	300	오산중 (446명)	오산시 청학로 43	
평택시	행정7급(일반행정)	11100018 ~ 11100163	146			

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

-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21. 11. 22(월) 전·후에 경기도 홈페이지(<https://www.gg.go.kr>)에 게시합니다.

5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및 등록 안내

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으므로, **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**에 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**가산점 정보를 등록**하여야 합니다.

- ※ 가산점 등록기간 및 시간: 2021. 10. 16.(토) 09:00 ~ 10. 19.(화) 18:00
(기간내에는 24시간 등록가능)
- ※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 → 마이페이지 → 가산자격증 등록
- ※ **취업지원대상자**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 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에서 확인
- ※ **의사상자 등**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(☎044-202-3255)에서 확인

가.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10%	•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• 취업지원대상자(또는 의사상자 등)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• 직렬별 적용 가산점은 최대 1개까지 인정 •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‘나~마’ 참고
의사상자 등	과목별 만점의 3% 또는 5%	
자격증 소지자 (직렬별 적용 가산점)	과목별 만점의 3%~5% (1개의 자격증만 인정)	

나.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)

- (1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5% 또는 10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- (2)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(기관별·직급별·직류별)로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※ 취업지원대상 확인 : 정부24(www.gov.kr)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

다. 의사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)

- (1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4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3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- (2)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(기관별·직급별·직류별)로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※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(☎044-202-3255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(3)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가 ‘나’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.

라. 자격증 소지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)

- (1) 직렬(직류)별 적용되는 가산점 ※ 해당분야 자격·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적용 제외

- 다음 직렬(직류)의 응시자가 직렬(직류)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, 각 과목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%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직렬(직류)	행정(일반행정)
가산자격증	변호사, 변리사

-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%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구 분	7급	
	기술사, 기능장, 기사	산업기사
가산비율	5%	3%

※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[붙임] 직렬(직류)별 적용되는 가산 자격증 안내 참조

마.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(1)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종류(가산비율), 자격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며, 취업지원 대상자(또는 의사상자)의 경우 가점비율과 보훈번호(증서번호)를 입력하여야 합니다.
(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.)

※ 자격증 종류(가산비율) 및 번호(보훈 및 증서번호)를 착오 입력하거나 누락한 경우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
- (2) 취업지원대상자(또는 의사상자) 가산점,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.

[붙임] 직렬(직류)별 적용되는 가산 자격증 안내

시험명	직 렬	직 류	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		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
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(7급)	행 정	일반 행정			변호사, 변리사
	농 업	일반 농업	기 술 사	종자, 시설원예, 농화학, 식품	
			기 사	종자, 시설원예, 식물보호, 토양환경, 식품, 바이오화학제품제조, 유기농업, 화훼장식	
			산업기사	종자, 식물보호, 농림토양평가관리, 식품, 유기농업	
		축산	기 술 사	축산, 식품	·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⇒ 수의사,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(일반), 방사선취급감독자 ·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⇒ 가축인공수정사
			기 사	축산, 식품	
			산업기사	축산, 식품	
	녹 지	산림 자원	기 술 사	조경, 종자, 산림, 농화학	
			기 사	산림, 조경, 종자, 임업종묘, 식물보호, 임산가공	
			산업기사	조경, 종자, 산림, 식물보호, 임산가공	
	보 건	보건	기 술 사	산업위생관리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, 방사선관리, 광해방지, 인간공학	·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⇒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, 수의사, 약사, 한약사,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(특수, 일반), 방사선 취급감독자, 응급구조사 1급, 보건교육사 1급 ·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⇒ 임상병리사, 보건의료정보관리사, 방사선사, 간호사, 조산사, 물리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, 작업치료사, 위생사, 영양사, 응급구조사 2급, 보건교육사 2급
			기 사	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, 광해방지, 인간공학	
			임상심리사2급 이상(5%)		
			산업기사	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	
	환 경	일반 환경	기 술 사	화공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조경, 산림, 농화학, 해양, 화공안전, 산업위생관리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지질 및 지반, 폐기물처리, 자연환경관리, 토양환경, 방사선관리, 기상예보, 광해방지	·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⇒ 의사, 약사, 수의사, 환경측정분석사(대기·수질)
			기 사	화공, 조경, 산림, 식물보호, 토양환경, 해양환경,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응용지질, 폐기물처리, 자연생태복원, 생물분류, 기상, 광해방지	

시험명	직 렬	직 류	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		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
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(7급)	시 설	일반 토목	산업기사	조경, 산림, 식물보호, 농림토양평가관리, 해양조사,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자연생태복원	·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⇒ 위생사
			기 술 사	토질 및 기초, 토목품질시험, 토목구조, 항만 및 해안, 도로 및 공항, 철도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농어업토목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지질 및 지반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	
			기 사	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응용지질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, 방재	
	시 설	건축	산업기사	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조경, 지적, 건설안전, 교통	
			기 술 사	건축전기설비, 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 건설안전, 소방	·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⇒ 건축사
			기 능 장	건축일반시공, 건축목재시공	
			기 사	건축설비, 건축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	
			산업기사	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 건축, 건축목공, 방수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	

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.